

2016

생활세금 시리즈

www.mts.go.kr TOP

국세청



NTS



국세청

2016

생활세금 시리즈



머 리 말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납세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금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부강하고 살기 좋은 선진 일류국가가 되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16년은 국세청이 1966년 개청 이래 50년이 되는 역사적 해입니다. 그간 국세청이 ‘국가재정 확보, 성실 납세 지원, 공평세정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덕분입니다.

이제 국세청은 과거 5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50년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성실 신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탈세에는 한층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성실 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세정집행의 핵심요소인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준법·청렴세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는 간편 신고 확대, 모바일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등 납세자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실 납세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우대를 통해 '성실 납세하는 국민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자나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나마 풀어주기 위해 '생활세금시리즈'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께 유용한 세금길잡이로 활용되고, 나아가 세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국세청장 김한수

Contents

1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01 기초 세금상식	10
02 사업자등록 안내	12
0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14
04 사업자 유형	16
05 확정일자 신청안내	18
06 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20
07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22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내	24

2 사업자와 세금신고

01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26
02 소득세 신고 · 납부	28
03 기준경비율제도	30
04 원천징수 납부	32
05 금융소득 종합과세	34
06 개별소비세 신고 · 납부	36
07 폐업신고	38
08 가산세	40

3 봉급생활자와 세금

01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44
02	의료비 세액공제제도	49
03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51
04	저축·보험·증권과 세금	53
05	퇴직금과 세금	56
06	연금과 세금	58
07	영수증을 챙기세요	60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62

4 주택과 세금

01	주택의 취득과 세금	66
02	주택의 양도와 세금	68
03	주택의 임대와 세금	70
04	1세대 1주택 비과세	72
0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2주택자	74
06	1세대 다주택 중과세 폐지·완화	76
07	종합부동산세 안내	77

Contents

5 부동산과 세금

01	부동산거래와 관련되는 세금	82
02	양도소득세 계산 요령	84
03	자경농지와 세금	89
04	재산의 상속과 세금	92
05	재산의 증여와 세금	95
06	부동산 취득자금과 세금	97
07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98
08	기업의 사전상속제도	100

6 유용한 세금정보

01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04
02	홈택스 이용 안내	106
03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이용 안내	108
0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109
05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111
06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	112
07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든든학자금)	114
	◎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일반세정)	117

7 성실납세 지원제도

01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122
02	세금포인트 제도	124
03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126
04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128
05	징수유예 · 납기연장 제도	130
06	국선대리인 제도	132
07	영세납세자 지원단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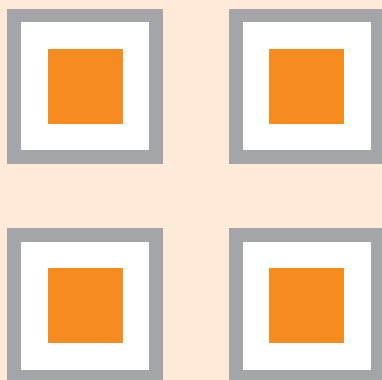
8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 제도

01	납세자권리헌장	136
02	납세자보호위원회	138
03	납세자보호담당관	139
04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140
05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142
06	탈세제보포상금	144
07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46
08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147
09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148
10	기타 신고포상금	149

2016

생활세금

시리즈



1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01	기초 세금상식	10
02	사업자등록 안내	12
0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14
04	사업자 유형	16
05	확정일자 신청안내	18
06	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20
07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22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내	24

1. 기초 세금상식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업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적용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용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 2.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적용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개별소비세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납부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 골프장, 카지노, 투전기사업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경영자(2011. 7. 1. 부터 장외 발매소 포함)
-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희장소의 경영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자(1개당 500만원 초과분)
- 고급가구(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시계(1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모피 등(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용단(200만원, m²당 10만원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원 초과분, 2014. 1. 1. 이후), 승용자동차, 석유류, 발전용유연탄(2014. 7. 1. 이후), 담배(2015. 1. 1. 이후)
- 투전기·오락용 사형기구 등, 수렵용 총포류, 로얄제리를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

☒ 소득세

-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부가 가치세	법인 사업자	1기 예정	4. 1.~4. 25.	1. 1.~3. 31.의 사업실적
		1기 확정	7. 1.~7. 25.	4. 1.~6. 30.의 사업실적
		2기 예정	10. 1.~10. 25.	7. 1.~9. 30.의 사업실적
		2기 확정	1. 1.~1. 25.	10. 1.~12. 31.의 사업실적
	개인 일반 사업자	1기 확정	7. 1.~7. 25.	1. 1.~6. 30.의 사업실적
		2기 확정	1. 1.~1. 25.	7. 1.~12. 31.의 사업실적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개인 간이 과세자	1기 확정	1. 1.~1. 25.	1. 1.~12. 31.의 사업실적
소득세	개인 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해 5. 1.~5. 31.	1. 1.~12. 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 15.고지)	11. 1.~11. 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or 중간예납 추가액
개별 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익월 25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과세장소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석유류, 담배는 다음달 말일까지)		3개월의 입장인원
	가구제조업 등			3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 (기준가격 초과분)
사업장 현황신고	개인 면세사업자	다음해 1. 1~2.10.		1. 1.~12. 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 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가납부자	7. 10. / 1. 10.	

-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석유류, 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입장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안내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 · 소매, 가정용 및 차량용 연료 관련업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형장소 영위자)

-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 ◆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제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계속 적용됨)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법인 : 공급가액의 1%
-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내)참조 또는 ‘국세청 126 세미레콜센터’에 문의

4. 사업자 유형

○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합니다.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부세금	소득세	법인세
세율구조	6~38% (5단계)	10~22% (3단계)
납세지	사업자 주소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기장의무	복식부기(원칙) / 간편장부	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	없음	직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 등

5. 확정일자 신청안내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란?

-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 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3억원 이하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2억 4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8천만원 이하

※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100

㉠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 ◆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6. 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 · 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6.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화물운송·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건설기계대여업), 자동차등록원부(화물운송업) 사본
 3. 기타 참고 서류
 - 위·수탁 관리 계약서,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납세자 인감증명서 1부, 외국인 제외)
-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교회 등 고유번호 신청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3.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서
4.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 등본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5.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휴)폐업신고

1. (휴)폐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 민원증명 신청

1. 민원신청서
2.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3. 위임하는 경우,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본), 기타의 경우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 구비서류 관련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라콜센터

7.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 ◆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을 충당합니다.
- ◆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이 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

사례 1

- 가정주부인 김○○는 절친한 이웃 박△△(女)가 김○○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
- 박△△는 김○○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 김○○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 박△△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에게 부과됨.
- 세금의 체납으로 김○○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예금 1천 2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함)
-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사례 2

- 한○○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 건네줌.
- 최△△는 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 최△△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천 5백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에게 부과됨.
- 최△△는 행방불명이며 세금체납으로 한○○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예금 8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 세금에 충당함)
- 한○○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절대 명의를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내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상태 (계속사업자, 휴 · 폐업 여부) • 과세유형 • 사업자등록 유무
서비스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조회 / 발급 → 사업자 상태)
공인인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공인인증서 불필요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공인인증서 필요
자료제공 시기	매일 업데이트 (실제 자료와 1일간 시차 발생)

2

사업자와 세금신고

01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26
02	소득세 신고 · 납부	28
03	기준경비율제도	30
04	원천징수 납부	32
05	금융소득 종합과세	34
06	개별소비세 신고 · 납부	36
07	폐업신고	38
08	가산세	40

1.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 일반사업자

-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 1.~6. 30.	예정신고	1. 1.~3. 31.	4. 1.~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6. 30.	7. 1.~7. 25.	법인·개인 사업자
제2기 7. 1.~12. 31.	예정신고	7. 1.~9. 30.	10. 1.~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12. 31.	다음해 1. 1.~1. 25.	법인·개인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 개인사업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 1.~12. 31.	다음해 1. 1.~1. 25.

※ 간이과세자도 사업부진자 등은 7. 1.~7. 25.까지 예정부과세액 납부와 신고 선택 가능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2. 소득세 신고 · 납부

○ 소득세 신고 · 납부

-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 1.~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해 6. 30.까지 신고·납부 가능
-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소득분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장부의 비치·기장

-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 ◆ **간편장부 대상자**
 -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 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 밖에 내국 및 외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미만
다. 법 제45조 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당 무신고는 40%)와 수입 금액의 0.07%(부당 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 ◆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 곱하여 계산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당 무신고 시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3. 기준경비율제도

㉠ 기준경비율제도란?

-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구분	기준금액 [직전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백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2천 4백만원

- 적용 예 :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7. 5.(2016년 귀속분) 신고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 즉,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3천 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임

※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2011년 귀속분부터)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 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

-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①, ② 중 적은 금액).

$$\begin{aligned} \text{① 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text{② 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times \text{배율}^{**} \end{aligned}$$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 곱하여 계산

** 2016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

-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 받아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며, 정규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 납부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 10. 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 10.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 반기별 납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직전연도 12. 1.~12. 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 1.~6. 30.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로 등)
 - 지역권 · 지상권 설정대가
 - 공익법인이 주주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 부상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인정)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계약의 위약 · 해약으로 받는 주택임주 지체상금
- 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 봉사료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 ◆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 ◆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 · 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과세 대상

-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됩니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5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6%~38%)되나, 2,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되고,
- ◆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 ◆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율]

20% ▶ 15% (2001년부터) ▶ 14% (2005년부터)

㉠유의할 사항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 ◆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6.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 입장 또는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 과세대상은 「과세물품」·「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구분됩니다.
- ◆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품 판매·제조 : 사업개시 5일 전까지
 -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영업 : 영업개시 전까지
- ◆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에도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석유류(유연탄), 담배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입장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과세영업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영업행위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해 3월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관할 세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 과세유흥장소 : 유흥음식요금
- ◆ 과 세 장 소 : 입장인원
- ◆ 제 조 업 : 제조장 반출가격. 다만,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은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 ◆ 과세영업장소 : 총매출액(고객에게 받은 총금액 -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캠핑용 차량은 5%
 - 2012. 3. 15. 이후 반출차량 8%, 2013년 7%, 2014년 6%, 2015년 이후 5%
(2012. 3. 15.~2012. 9. 10. 8%, 2012. 9. 11.~2012. 12. 31. 6.5%,
2015. 8. 27.~2016. 6.30. 3.5%)
- ◆ 배기량 1000cc 초과~2000cc 이하 승용차는 5%
(2012. 9. 11.~2012. 12. 31. 3.5%, 2015. 8. 27.~2016. 6.30. 3.5%)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전기승용차는 5%(2017년까지 2백만원 한도로 감면)
(2015. 8. 27.~2016. 6.30. 3.5%)

다만, 다음의 차량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 ◆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
- ◆ 일정 조건의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1인 1대에 한하여 5백만원까지)
- ◆ 길이 3.6m, 폭 1.6m 이하인 경형 전기승용차 차량

㉠ 과세장소 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경마장(장외발매소)은 1,000원(2,000원)
- ◆ 투전기시설 장소는 10,000원
- ◆ 골프장은 12,000원(제주도 지역 2016~2017년 3,000원)
- ◆ 경륜장·경정장(장외발매소)은 400원(800원)
- ◆ 폐광지역지원 허가지역 카지노는 내국인 6,300원
- ◆ 기타지역 카지노는 내국인 50,000원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유흥주점·음식점의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1월 중 매출액이 1억원이라고 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사업자의 경우).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0,000,000원 ÷ 1.1 = 90,909,090원
-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90,909,090원 ÷ 1.13 = 80,450,522원
- ◆ 개 별 소 비 세 : 80,450,522원 × 10% = 8,045,052원
- ◆ 교 육 세 : 8,045,052원 × 30% = 2,413,515원
- ◆ 부 가 가 치 세 : 90,909,090원 × 10% = 9,090,900원
※ 개별소비세율 : 10%, 교육세율 : 개별소비세의 30%

7. 폐업신고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자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대상업종 확대예정).

❧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 시기	신고납부 대상
1기(상반기) 중 폐업 시	1. 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기(하반기) 중 폐업 시	7. 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 1. 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5. 31. 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8.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 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 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7/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 +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무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 ② 수입금액 × 14/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 +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 ②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 + ②)	①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②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제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과소신고 · 초과환급 신고가 아닌 부정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아래 ①,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 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 납부세액 등) × 10%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아래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 ②) + ③)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 × 14/10,000 ③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 + ② + ③)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③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아래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①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 × 3/10,000

② 초과환급받은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 × 3/10,000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 3% +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 × 3/10,000

②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 10%

㉠가산세 감면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합니다(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은 제외).

내용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	과소신고 · 초과환급가산세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10%
기한 후 신고 · 납부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 상기 외에도 세법에서 다양한 가산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부칙(제 12848호, 2014.12.23) 제 10조 각 항의 적용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레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 바랍니다.



3

보급생활자와 세금

01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44
02	의료비 세액공제제도	49
03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51
04	저축·보험·증권과 세금	53
05	퇴직금과 세금	56
06	연금과 세금	58
07	영수증을 챙기세요	60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62

1.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월급을 줄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합니다.
- ◆ 봉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봉급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 계산절차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세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
일용근로자	1일당 10만원

◆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1.5억원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과세표준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 : 1인당 150만원 • 직계존속 : 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 자녀·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18세 미만)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녀자공제 : 50만원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70세 이상) • 한부모공제 :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
연금보험료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 전액

◆ 특별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액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전액
주택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 1,800만원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원 - 만기 15년 이상 기타 : 500만원 -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원

◆ 기타 소득공제

구 분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액
개인연금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12. 31. 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기명식선불카드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3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각각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도 추가 적용) • 2016년 상반기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의 본인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 20% 추가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저축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 특별세액공제 등

구 분		세액공제대상 및 세액공제율
자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연 700만원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DC형, IRP형), 과학기술인공제))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2%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원 한도) : 세액공제 대상액의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원 한도)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양가족의 경우 700만원 한도,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의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300만원 한도,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 한도, 본인·장애인의 경우 한도 없음)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의 100% 한도 - 법정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의 100% 한도 - 우리나라주조합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 지정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종합소득금액의 10% 한도)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2015년까지 3천만원 초과분은 25%, 2016년 이후 기부분부터는 2천만원 초과분 30%)
	표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신출세액에서 공제
기타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월세 지출액(750만원 한도)의 1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전통시장의 범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안의 상점 등을 말함
- ◆ 대중교통의 범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지하철, 철도(KTX 포함))

〈 계산 사례 〉

- 총급여 4,8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1,3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포함)
- 현금영수증 사용액 8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400만원 포함)
- 체크카드 사용분 : 5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포함)
-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2,2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체크카드 등 사용액 1,400만원)
- 2015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2,400만원
- 2016년 상반기 전통시장·대중교통·체크카드 등 사용액 1,000만원

최저사용금액 (1,200만원)	100만원 (공제율 30%)	}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100만원)
	500만원 (공제율 30%)	
	400만원 (공제율 30%)	} 체크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400만원 (공제율 30%)	
	1,200만원	} 신용카드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2,600만원)

- 공제가능금액 : 480만원
 $(\text{현금영수증 } 400\text{만원} \times 30\%) + (\text{체크카드 } 400\text{만원} \times 30\%) + (\text{전통시장 } 500\text{만원} \times 30\%) + (\text{대중교통비 } 100\text{만원} \times 30\%) + \{2016\text{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1,000\text{만원}) - 2014\text{년 추가공제율사용분}(1,400\text{만원}) \times 50\% \} \times 20\% = 480\text{만원}$
- 공제한도액 : 430만원
 $= \min(300\text{만원}, \text{총급여} \times 20\%) + \min(\text{한도초과액}^*, \text{전통시장} \times 30\%, 100\text{만원}) + \min(\text{한도초과액}^{*2}, \text{대중교통} \times 30\%, 100\text{만원})$
 $^*1 : 480\text{만원}(\text{공제가능금액}) - 300\text{만원}(\text{한도액})$
 $^*2 : 480\text{만원} - 300\text{만원} - 100\text{만원}(\text{전통시장 추가공제액})$
 $= 300\text{만원} + \min(180\text{만원}, 150\text{만원}, 100\text{만원}) + \min(80\text{만원}, 30\text{만원}, 100\text{만원}) = 430\text{만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430만원(공제가능금액과 공제한도액 중 적은 금액)

2. 의료비 세액공제제도

㉠의료비 공제

- ◆ 당해연도 1. 1.~12. 31. 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 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text{총급여액} = \text{연간 급여액} - \text{비과세 소득}$$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 (700 만원 한도)

$$\text{의료비총액} - (\text{총급여액} \times 3\%) = \text{공제대상의료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text{① 한도초과금액} = \text{의료비총액} - (\text{총급여액} \times 3\%) - 700\text{만원}$$

$$\text{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text{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text{만원} = \text{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공제대상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 (한약 포함)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 ·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 2010. 1. 1. 부터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절차

-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에서 제공)
 -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사본
 - 기타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 국내 교육비 공제

- ◆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
 - 1인당 50만원 이내 교육구입비도 공제됩니다(중·고등학생).
 - 소득세·증여세가 부과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본인	직계비속 등	
전액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되는 학자금은 제외)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계산사례

-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인 경우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액 계산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50만원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합계
350만원

㉠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무자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 교육부,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저축·보험·증권과 세금

㉠저축과 세금

◆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소득세액의 10%)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근로 소득세 계산 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저축 : 세금 전액 면제

저축명	가입대상	불입요건	적용기한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1인당 5,000만원 이하	2019.12.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조합 등 예탁금	만20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농민·어민, 농협 등의 조합원·회원	3,000만원 이하	2018. 12. 31. 까지 발생된 이자소득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농민(2ha 이하 경작) 어민(20t 이하 어선 소유)	연간 144만원 이하 3~5년 저축계약	2017.12.31. 이전 가입분 이자소득
재형저축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자)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분기별 300만원 이내 계약기간 7년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2015.12.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 2015년 가입시 61세 이상으로 함(2016년 62세, 2017년 63세, 2018년 64세)

◆ 세금우대종합저축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농어촌 특별세 포함 시 9.5%)로 과세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등의 저축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저축
- 가입한도
 - 3천만원 :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 1천만원 : 20세 이상
- 적용기한 : 2014. 12. 31.까지 가입분

◆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저축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 소득공제

저축명	공제금액
연금저축계좌	연간 납입액(연간 4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저축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무주택 세대주 등)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액의 40%(연간 24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종합합산소득이 없는 자)

㉠보험과 세금

◆ 저축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의 만기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비과세 보험차익 :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기저축성 보험

계약 기준일	계약 내용	제외 사유
2003. 12. 31. 이전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	피보험자의 사망 · 질병 · 부상 기타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받은 보험금이 아닐 것
2004. 1. 1. 이후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2013. 2. 15. 이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성보험 계약 1. 계약자의 총저축성보험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보험계약으로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2.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으로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의 균등 조건 등의 요건 충족) 3. 종신형 연금보험(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계약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 까지 보험금 · 수익 등을 연금으로 수령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 소멸 -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 중도 해지 불가	

◆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보험금

보험사고의 발생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중 다음 금액은 상속·증여재산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총불입한 보험료)

- 증여재산 :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 (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총불입한 보험료)

☒ 증권과 세금

◆ 배당소득을 받거나 증권 거래 시에는 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됩니다.

- 배당소득 :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15.4%
- 증권거래 : 증권거래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농특세(상장주식 0.3%, 코스닥등록 주식 0.45%)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22~33%(중소기업의 경우 11%)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5. 퇴직금과 세금

✕ 퇴직소득과 세금

- ◆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비 과 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 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 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보조금,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가. 과세표준(소법 §14⑥)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나. 산출세액(소법 §55)

1) 2015년 이전 퇴직소득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2013. 1. 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과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2013. 1. 1. 이후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을 빼서 계산한다(①+②).

① 2013. 1. 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frac{\text{퇴직소득과세표준}}{\text{근속연수}} \times 5 \times \text{기본세율} \div 5 \times \text{근속연수}$$

②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frac{\text{퇴직소득과세표준}}{\text{근속연수}} \times \text{기본세율} \times \text{근속연수}$$

- 소득세법 부칙(11611호, 2013. 1. 1.)

제22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 12. 31. 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2016년 이후 퇴직소득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① 퇴직소득 과세표준

$$\text{환산급여}((\text{퇴직소득금액} - \text{근속연수공제}) \div \text{근속연수} \times 12) - \text{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차등공제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② 퇴직소득 산출세액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text{퇴직소득 과세표준} \times \text{기본세율}) \div 12) \times \text{근속연수}$$

③ 경과조치(소득세법 부칙 제12852호, 2014. 12. 23.)

2016. 1. 1. 부터 2019.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과 2016. 1. 1. 이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에 아래에 따른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text{㉔}) \times \text{연도별 적용비율} + (\text{㉕}) \times \text{연도별 적용비율}$$

<연도별 적용비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㉔ 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	80%	60%	40%	20%
㉕ 2016. 1. 1. 이후 계산방법	20%	40%	60%	80%

다. 세율(소법 §55)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천 200만원 이하	6%	-
4천 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천 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0,000원

6. 연금과 세금

㉸ 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 연금소득의 구분

◆ 연금계좌(사적연금)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비과세 연금소득

◆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연금소득세 계산법

◆ 계산절차

연 간 연 금 액
(-)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 과 세 소 득
총 연 금 액
(-) 연 금 소 득 공 제
연 금 소 득 금 액
(-) 각 종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 세 율 (6~38%)
산 출 세 액
(-) 각 종 세 액 공 제
(-) 기 납 부 세 액
납 부 (환급) 할 세 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 900만원 한도)

☒ 연금소득 과세방법

-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 하고, 1 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종합소득과세).
- ◆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5%~3%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해 5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총연금액이 연 1,200 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영수증을 챙기세요.

다음의 영수증을 모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더 많은 혜택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 ◆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영수증

- ◆ 신용 · 직불 · 기명식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기명의로 아닌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 ◆ 병 · 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 비용은 제외

㉠ 보험료 영수증

-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일반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맞벌이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영수증

- ◆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 영수증

- ◆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100(3천만원 초과분은 25/1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 ◆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 × 5만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1일로 계산)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란?

-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5)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요건

- 만 18세 미만(1997.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배우자가 있거나 본인이 만 50세 이상(1965. 12. 31.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에는 동거입양자와 부모가 없거나 자신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는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4,000만원

- ▶ 근로소득 = 총급여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3. 주택요건

-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하여야 합니다.

4.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5. 기타사항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일 것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 금년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가 아닐 것 (자녀장려금만 해당)

㉞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 가구 유형별로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 사업소득)의 금액을 장려금 산정표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11, 11의2)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 (자녀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화면우측 상단의 「모의계산」에서 계산가능

㉞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6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ARS 등 전자신청하고, 받지 못한 경우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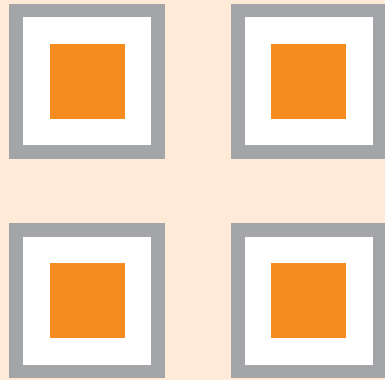
㉞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㉞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016
생활세금
시리즈



4 주택과 세금

- 01 주택의 취득과 세금 66
- 02 주택의 양도와 세금 68
- 03 주택의 임대와 세금 70
- 04 1세대 1주택 비과세 72
- 0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2주택자 74
- 06 1세대 다주택 종과세 폐지 · 완화 76
- 07 종합부동산세 안내 77

1. 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 취득과 세금

- ◆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구 분	국 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 부가세
취득 시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일정금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

○ 주택 취득 시 세금의 신고·납부

◆ 지방세

- 취득세 :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 이하 주택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초과	1%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85㎡ 이하	2%	비과세	0.2%	2.2%
	85㎡ 초과	2%	0.2%	0.2%	2.4%
9억 초과 주택	85㎡ 이하	3%	비과세	0.3%	3.3%
	85㎡ 초과	3%	0.2%	0.3%	3.5%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증여)		3.5%	0.2%	0.3%	4%
농지	매매	신규	3%	0.2%	3.4%
		2년 이상 자경	1.5%	비과세	1.6%
		상속	2.3%	0.2%	2.56%

- 1) 2013. 8. 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 2) 국민주택이하(85㎡이하)는 농어촌특별세 부과
 -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짐

◆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 2015. 1. 1부터 인터넷 상("전자수입인지"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첨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92, 95pag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97pag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 재산세

- 매년 6. 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매년 6. 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77pag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부가세

-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2.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주택의 양도와 세금

-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구: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 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6~70%의 세율로 과세되며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양도소득세율	비 고
1년 미만 주택	과세표준의 40%	
1년 이상 주택	과세표준의 6%~38%	지정지역(2015. 2. 현재 없음)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10%p 가산
미등기 주택	과세표준의 7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됨

※ 양도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함

- ◆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 다만,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2011. 6. 2.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72, 74pag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 1. ~5.31. 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a.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면서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써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 예정(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 부당무신고는 40%) 및 무납부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 ◆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이 과세됩니다.
- ◆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비과세됩니다.

3. 주택의 임대와 세금

㉸ 주택의 임대와 세금

◆ 부가가치세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다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소득세

-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서민들의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 아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주거용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합니다.

- 2014. 1. 1.부터 2016.12.31. 까지의 과세기간에서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
- 201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 분리과세

㉸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9억원(2008. 10. 6. 이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 수 계산

-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 중 1인의 소유로 정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 합니다.

- ◆ 임차 또는 전세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 다만, 고가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임차하여 주택과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임차인별로 판단합니다.

㉠과세방법

◆ 월세를 받는 경우

-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 2011년 귀속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0%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 만큼 총수입금액에 포함 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 다만, 소형주택은 2016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수 선정에서 제외하여 과세 하지 않습니다.

※ 소형주택 :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4. 1세대 1주택 비과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 ◆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2011. 6. 2. 이전에 서울특별시, 과천시, 5대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장기저당담보주택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 ◆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완공 후 2년 이내) 하게 되어 팔게 될 때. 다만,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받아 파는 경우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 ◆ 1세대1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2008. 10. 7. 이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 2011. 7. 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됩니다.

-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 ◆ 1주택 소유자가 상속을 받아(아래 a>b>c>d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 다만, 2010. 2. 18. 이후부터는 동거분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 a.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b. a가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c. a와 b가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 d.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a가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 1세대 1주택이라도 미등기 전매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 상시 주거용이 아닌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겸용주택의 비과세

- ◆ 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결정

구 분	비과세 여부
주택 > 점포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주택 ≤ 점포	주택부분은 비과세, 점포부분만 과세

- ◆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2주택자

㉸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해야 하는 요건 적용 배제 :
 - 1) 건설임대 주택 분양전환
 - 2) 종전주택 수용
 - 3)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 수도권 소재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다만,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

- ◆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양도시가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저당담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받아 집이 두 채가 될 때

- ◆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 이외의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2주택으로서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 양도시 과세대상입니다.
⇒ 2013. 2. 15. 이후는 상속받은 시점에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
- ◆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앞 73page의 a>b>c>d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 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읍지역의 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 2003. 8. 1.(고향주택은 2009. 1. 1. 부터)~2017. 12. 31. 기간 중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농어촌 주택

- 농어촌지역 : 읍·면·인구 20만 이하인 시의 동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가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내
- 주택가격 : 농어촌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은 4억원 이하 → 2014. 1. 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고향 주택

- 고향주택 : 시 지역(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내
- 주택가격 : 고향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은 4억원 이하 → 2014. 1. 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6. 1세대 다주택 중과세 폐지 · 완화

○ 2007년부터 적용하던 2주택 이상 중과 세율을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으나 2014. 1. 1. 완전 폐지하였습니다.

- ◆ 따라서 2007. 1. 1. 부터 2008. 12. 31. 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만 50%의 세율로 중과되고, 해당 기간 이외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1년 미만 단기 양도시 40% 세율 적용 ⇨ 2014.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적용됩니다.
- ◆ 중과 폐지에 앞서 2012.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이상 중과 세율 적용대상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를 적용받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2011. 12. 31. 까지 양도한 주택은 해당없음).

○ 2004년부터 적용하던 3주택 이상 중과 세율을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으나 2014. 1. 1. 중과 세율을 완전 폐지 및 완화하였습니다.

- ◆ 따라서 2004. 1. 1. 부터 2008. 12. 31. 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만 60%의 세율로 중과됩니다.
- ◆ 다만, 2009. 3. 16. 이후 양도분 중 지정지역(현재 지정지역 없음)에 소재하는 주택거래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에 10%p가 가산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 ◆ 또한, 1년 미만 단기 양도의 경우 2014. 1. 1. 이후 양도분부터 40%의 비례세율(비례세율과 누진세율+10%p의 세율이 경합하는 경우 산출세액이 큰것)이 적용됩니다.
- ◆ 중과 폐지에 앞서 2012.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이상 중과 세율 적용대상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를 적용받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2011. 12. 31. 까지 양도한 주택은 해당없음).

7. 종합부동산세 안내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 1.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지방세)를 과세하고,
-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공제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 공제금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됩니다.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 구분		공제금액
주택	인별 전국 합산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어떤 부동산이 과세대상이 되나요?

구 분	부 동 산	과세여부
건 물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	○
	오피스텔(주거용)	○
	일반건축물(상가·사무실·빌딩 등)	×
	공장건물, 별장(휴양·피서용)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	×
	일정한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주거겸용 놀이방)	×
토 지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일부	×
기 타	분양권	×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주권	×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 ◆ 매년 6. 1.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 1.~12. 15.)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banking,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위 납부기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먼저, 임대사업자등록(시청·군청·구청)과 사업자등록(세무서) 후 합산배제신고를 하여야 과세 제외됩니다.

◆ 세부담상한

과세대상 유형별로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액상당액 +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과 비교하여 일정한도(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면제됩니다.

- ◆ 1세대 1주택 고령자 ·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표 *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6억 이하	0.5%	-	15억 이하	0.75%	-	200억 이하	0.5%	-
6억 ~ 12억	0.75%	150만원						
12억 ~ 50억	1%	450만원						
50억 ~ 94억	1.5%	2,950만원	15억 ~ 45억	1.5%	1,125만원	200억 ~ 400억	0.6%	2,000만원
94억 초과	2.0%	7,650만원	45억 초과	2.0%	3,375만원	400억 초과	0.7%	6,000만원

* 과세표준 =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주택·토지 공시가격의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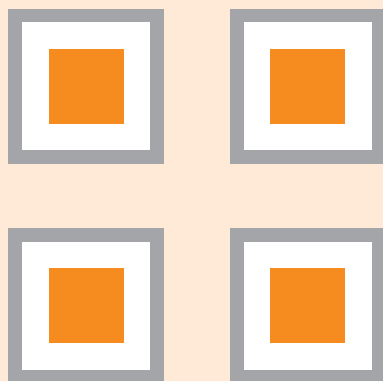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 지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		
공시일자	4월 30일	4월 30일		5월 31일
공시기관	시청 · 군청 · 구청	국토교통부		시청 · 군청 · 구청
가격열람	시청 · 군청 · 구청 종합민원실			

※ 공시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

생활세금

시리즈



5 부동산과 세금

01	부동산거래와 관련되는 세금	82
02	양도소득세 계산 요령	84
03	자경농지와 세금	89
04	재산의 상속과 세금	92
05	재산의 증여와 세금	95
06	부동산 취득자금과 세금	97
07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98
08	가업의 사전상속제도	100

1. 부동산거래와 관련되는 세금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관련됩니다.

-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을 팔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 등기소에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소정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 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 부가세
취득시점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보유시점	종합부동산세(일정금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
양도시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부동산 등을 매매계약 하는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합니다.

- ◆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의 경우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에 기재되며,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팔게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72pag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이 감면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89pag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을 팔 때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이에 부수하여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 이하 주택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초과	1%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85㎡ 이하	2%	비과세	0.2%	2.2%	
	85㎡ 초과	2%	0.2%	0.2%	2.4%	
9억 초과 주택	85㎡ 이하	3%	비과세	0.3%	3.3%	
	85㎡ 초과	3%	0.2%	0.3%	3.5%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증여)		3.5%	0.2%	0.3%	4%	
농지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 이상 자경	1.5%	비과세	0.1%	1.6%
		상속	2.3%	0.2%	0.06%	2.56%

- 1) 2013. 8. 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 2) 국민주택이하(85㎡이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짐.

❍ **매매거래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 부부간의 거래나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97pag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요령

㉸ 양도소득세의 계산

-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 계산절차

양	도	가	액							
(-)	취	득	가	액						
(-)	필	요	경	비	등					
양	도	차	익							
(-)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양	도	소	득							
(-)	감	면	대	상	양	도	소	득	금	액
(-)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	감	면	세	액						
자	진	납	부	할	세	액				

◆ 세율

자 산	구 분	'02. 1. 1. 이후 양도	'04. 1. 1. ~ '08. 12. 31.	'09. 1. 1. ~ '09. 3. 15.	'09. 3. 16. ~ '13. 12. 31.	'14. 1. 1. ~
토지 ·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36%	50%		50% ^{1),3)}
		2년 미만	누진세율	40%	40% ¹⁾	40% ^{1),4)}
		2년 이상	누진세율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누진세율 ('07년부터 50%)	누진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45% (1년 이상)	누진세율 (단, 지정지역 ²⁾ ⇒ 누진세율 + 10%p)	누진세율 (단, 지정지역 ⇒ 누진세율 + 10%p)
비사업용 토지	-	'07년부터 60%		누진세율 (단, 지정지역 ⇒ 누진세율 + 10%p)	누진세율 (단, 지정지역 ⇒ 누진세율 + 10%p) ⁵⁾	
미등기양도자산	60%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세율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누진세율 +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 2) 2012. 5. 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2008. 11. 7. 토지지정지역 해제 ⇨ 2016. 3. 현재 지정지역 없음
-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2014. 1. 1. 부터 적용
-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2014. 1. 1. 부터 적용
- 5) 2016. 1. 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누진세율 + 10%p

◆ 2014. 1. 1. 이후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주택	2주택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일반세율		
	3주택	지정지역	1년 미만	40%	산출세액 중 큰 것
				일반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일반세율	
비사업용 토지	2016. 1. 1. 이후	1년 미만	50%	산출세액 중 큰 것	
			일반세율+10%p		
		2년 미만	40%		
			일반세율+10%p		
	2015. 12. 31. 이전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 세율표

2008년			2009년~2011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2009년		2010년~2011년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9%	-	1,200만원 이하	6%	-	6%	-
4,000만원 이하	18%	90만원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15%	108만원
8,000만원 이하	27%	450만원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24%	522만원
8,000만원 초과	36%	1,170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35%	1,490만원
2012년~2013년			2014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2016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2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34%	522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4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48%	1,940만원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 이익(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계약서 등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잘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ext{양도차익} = \text{실지양도가액} - \text{실지취득가액} - \text{기타 필요경비}(\text{①} + \text{②} + \text{③})$$

- 실지 양도가액 :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
- 실지 취득가액 :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

① 취득 시 부대비용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

② 취득 후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 등 비용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을 말함
-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명도비용·인지대 등도 포함
- 취득 후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소송비용·명도비용·인지대 등도 포함
 - ※ 단, 2016년 2월 17일 이후 지출하는 비용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③ 양도비용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말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구 분	2008. 1. 1. ~ 2008. 3. 20.		2008. 3. 21. ~ 2008. 12. 31.		2009. 1. 1. ~ 2011. 12. 31.		2012. 1. 1. ~	
적용대상	토지	1세대 1주택	토지	1세대 1주택	토지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다주택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3년 이상	10%	10%	10%	12%	10%	24%	10%	24%
4년 이상	12%	12%	12%	16%	12%	32%	12%	32%
5년 이상	15%	15%	15%	20%	15%	40%	15%	40%
6년 이상	18%	18%	18%	24%	18%	48%	18%	48%
7년 이상	21%	21%	21%	28%	21%	56%	21%	56%
8년 이상	24%	24%	24%	32%	24%	64%	24%	64%
9년 이상	27%	27%	27%	36%	27%	72%	27%	72%
10년 이상	30%	30%	30%	40%	30%	80%	30%	80%
	11년	33%	11년	44%				
	12년	36%	12년	48%				
	13년	39%	13년	52%				
	14년	42%	14년	56%				
	15년	45%	15년	60%				
	이상		16년	64%				
			17년	68%				
			18년	72%				
			19년	76%				
			20년 이상	80%				

※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는 적용하지 않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는 적용하되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주택의 경우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최고 80%까지 적용. 다만,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일지라도 최고 30% 공제

- 비과세 요건 갖춘 고가주택으로 9억원 초과 과세되는 주택

-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되지 않는 1주택자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을 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8년(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7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a.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연 5%의 인상율

b. 전용면적 85㎡ 이하(다가구 주택일 경우 기구당 전용면적 기준)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음의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연 3%, 최대 30%)에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 민간매입임대주택 : 1호 이상,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 : 2호 이상, 대지면적 298㎡이하 and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이 149㎡ 이하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2 %
7년 이상 8년 미만	4 %
8년 이상 9년 미만	6 %
9년 이상 10년 미만	8 %
10년 이상	10 %

○ 양도소득기본공제

◆ 다음의 소득별로 각각 연간 250 만원을 공제하며, 동일한 소득별 자산을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파생상품

◆ 공제 제외 : 미등기양도자산

3. 자경농지와 세금

㉠자경농지의 양도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내의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봄)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상속 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②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

-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는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부동산임대, 농기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

☞ 1년간 한도 : 2016. 1. 1. 이후 양도 1억원, 2015. 12. 31. 이전 양도 2억원

※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8. 12.31. 까지 양도한 경우

◆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농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
- 시지역(읍·면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농지는 제외)

- ☞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
- ☞ 읍·면지역의 경우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것과 상관없이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8년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㉞ 자경농지의 대토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토감면 가능

- a.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 b.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협의매수·수용시 2년 내) 내에 새로운 농지 취득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 양도
- c. (종전 농지를 먼저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개시
- d.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나중에 양도한 경우)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개시
- e. 새로운 농지 거주하며 계속 경작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 합산 8년 이상
- f.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적용례)

- 가. 위 'a', 'c~f' ☞ 2014. 7. 1.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나. 다만, 위 'e', 새로운 농지 취득 후 4년 이내에 협의매수·수용되어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합산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혼·자경하는 경우 경작기간 통산 및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자경감면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에 따른 기간(3,700만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개정규정 ☞ 2014. 6. 30. 이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2014. 7. 1.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거나 2014. 6. 30. 이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2014. 7. 1.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감면한도액

- ☞ 1년간 한도 : 2015.12.31. 이전 농지대토만 있으면 1억원, 8년 자경과 함께 있으면 2억원
2016. 1. 1. 이후 농지대토감면과 8년 자경감면을 합하여 1억원
- ☞ 5년간 한도 : 자경농지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2008. 1. 1. 이후)

㉠ 자경농지의 증여

◆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5년간 1억원 한도)

- 자경 농민 : 당해 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결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 자녀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농지 등의 범위 : 농지(40,0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영농조합 법인 출자지분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2) 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징됩니다(추징 시 이자 상당액 포함).

㉠ 자경농지의 교환

- ◆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가액의 1/4 이하여야 하고,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합니다.

4. 재산의 상속과 세금

☒ 상속세의 계산

- ◆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 세율

상속재산가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비과세·공과금·채무	1억원 이하	10%	-
(-) 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 세율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산출세액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추정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기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

• 간주·추정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등

☒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 ◆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각종 상속공제

◆ 공과금·장례비·채무

-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조세·공과금
-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 봉안시설(자연장 포함)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 감정평가 비용

- 감정평가업자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 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 별로 각 1천만원 한도
- 서화·골동품 등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 상속공제

- ① 기초공제 : 2억원(가업, 영농상속 추가공제)
- ②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정상속자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 ③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2015.12.31. 이전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연수 (2015.12.31. 이전 20세)
 -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원 (65세 이상인 자)
※ 2015.12.31. 이전 1인당 3천만원(60세 이상인자)
 - 장애자공제 : 1천만원 × 기대여명(통계청 매년 고시) 연수
※ 2015.12.31. 이전 5백만원 × 기대여명(통계청 매년 고시) 연수
- ④ 일괄공제
 - 「①기초공제 + ③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 : 금융재산가액 × 20%(2억원 한도)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이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공제할 수 없음.

⑥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무주택자인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는 1주택(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 것)의 경우 주택 가액의 80%(5억원 한도)를 공제

⑦ 위 상속 공제는 아래 산식과 같은 종합한도가 있음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 공제 차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5. 재산의 증여와 세금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의 계산

- ◆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증 여 재 산
(-) 증여재산 공제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

증여자	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2007. 12. 31. 이전에는 3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증여일이 2013. 12. 31. 이전인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 1천 5백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2015. 12. 31. 이전에는 3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2015. 12. 31. 이전에는 5백만원)

*기타친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함

㉠ 창업자금 사전상속 특례(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한도)

- ◆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 하는 경우
 -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
 - ※창업자금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98pag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사전상속 특례(100억원 한도)

- ◆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 등을 18세 이상의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 5억원 공제 후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

-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및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 및 금전은 과세
-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 과세합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단,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재산은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는 40%)를 가산합니다.

㉠증여세의 신고·납부

-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 신고 시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관련 증빙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시 제출 생략)
- ◆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6. 부동산 취득자금과 세금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인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집을 사게 되면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 소명금액 범위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 인정 범위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 차입금 : 차입금액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현금·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세금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 ◆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 제외
= 미입증금액 < [(취득 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 ◆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7.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 ◆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시점에서는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 상속(부모 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14. 1. 1. 조특법(§30의5)을 개정하여 적용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는?

- ◆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6③)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과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도소매, 여객운송업 등 제외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 창업자금으로 증여 가능한 재산은?

- ◆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 ·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 창업자금 증여세 계산

-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적용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 창업자금 : 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 한도
- ▶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 5억원
- ▶ 세율 : 10%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를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창업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0.3%)가 부과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 요건

- ◆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다음 사항 등 위반 시 이자상당액(1일 1만분의 3)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8. 기업의 사전상속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 ◆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기업의 주식(100억원 한도)을 자녀 1인이 증여받는 경우
 - 증여시점에서는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 상속(부모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14. 1. 1. 조특법(§30의6)을 개정하여 적용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가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 ◆ 가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였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2014. 1. 1. 이후부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10년 이상 계속하여 증여자나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30%, 2010. 12. 31. 이전은 40%) 이상을 보유했어야 합니다.

㉠수증자의 요건은?

- ◆ 수증자는 가업주식을 증여받는 날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 ◆ 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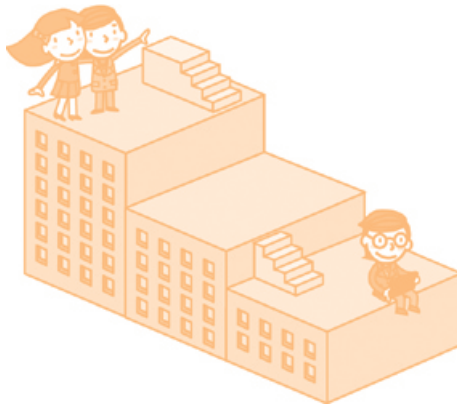
-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특례세율(10%, 2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가업승계 주식가액	▶주식가액 : 100억원 한도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 5억원
과 세 표 준	
(×) 세 율	▶세율 : 10%
산 출 세 액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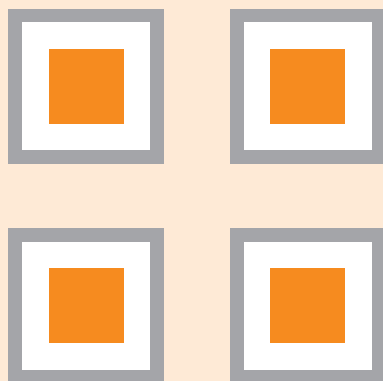
-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

생활세금

시리즈



6

유용한 세금정보

01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04
02	홈택스 이용 안내	106
03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이용 안내	108
0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109
05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111
06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	112
07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든든학자금)	114
◎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일반세정)	117

1.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란?

- ◆ 납세자 여러분의 국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한 국세청의 전문 상담서비스 기관입니다.
- ◆ 전국 어디에서나 세무상담을 요청하시면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이 많은 국세조사관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설치 배경 및 서비스 개선

- ◆ 국세청은 납세자 여러분에게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이를 위해 종전 국세청, 지방청, 세무서로 분산 되어 있던 세무상담 창구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정서비스와 관련한 고충, 불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 반영하여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이용안내

- ◆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전화,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세법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신고 납부·증명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비밀번호 등록, 세법상담, 탈세 등 각종제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 상담이 필요할 땐 국번없이 126번								
1						2	3	4
1	2	3	4	5	9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신고 납부·증명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비밀번호 등록	세법상담	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탈세 등 각종제보

- 일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탈세 등 각종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지방 거주 납세자의 경우, 126번 이용시 시내요금에 적용되어 통신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담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전화요금은 시내통화요금이 적용됩니다.

◆ 인터넷상담

- '홈택스 포털'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포털(hometax.go.kr)'로 접속 → 상담 / 제보 → 상담사례검색 → 인터넷상담 질문하기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시스템」

- ◆ 국세청은 세정서비스와 관련한 고충, 불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 반영하는 등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VOC 시스템 이용방법

- 세정서비스에 대한 고충, 불만, 건의, 칭찬 등을 전화(국번없이 126)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VOC 처리결과 회신

- 제기된 VOC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상황을 휴대폰 SMS와 E-mail을 통해 알려드리고 처리결과 회신과 함께 E-mail 또는 전화로 신뢰성과 신속성에 대한 고객평가를 받습니다.
- 제기되어 처리한 VOC는 더 나은 세정서비스 구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 홈택스 이용 안내

❖ 홈택스(Hometax)란?

- ◆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금(국세)의 신고·납부 및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국세 종합 서비스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 : www.hometax.go.kr

❖ 홈택스는 이렇게 편리합니다.

- ◆ 세금신고 및 납부, 민원증명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연말정산 자료 조회 등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 세무서나 은행 등에 가지 않고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 민원증명 등을 직접 출력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세무행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하거나, 회원가입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방법

•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분), 본인명의 휴대전화·신용카드로 가입
- (법인·세무대리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보안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로 가입

• 가까운 세무서 방문 가입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 본인(법인은 대표자)이 직접 가입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이용신청서」 1부, 신청자의 신분증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이용신청서」 1부, 위임장 1부,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비회원으로 이용하는 방법

개인은 회원가입 없이 본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분)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 서비스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증여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조회, 사업장 현황 신고서 등

㉠「홈택스」 주요 서비스 내용

◆ 전자신고

-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21 종)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세목(13종) 및 사업장현황 신고서, 공익법인보고서 등 주요 신고서류(8종)

◆ 전자납부

- 납세자가 세무서나 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 모든 국세(고지 및 자진 신고분 포함)

◆ 전자고지

- 세금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의 고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음).
- 대상 :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모든 국세

◆ 전자민원

- 인터넷으로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고 납세자의 PC에서 증명서를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민원증명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상 (14 종)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증명(개인/법인),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모든 증명은 영문증명 발급가능 [단,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제외]

◆ 조회 서비스

- 납세자 본인의 신고내역과 납부내역 및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등 세무정보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 신고내역 5종(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지급명세서) 및 납부내역, 기타내역 15종(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환급금조회, 부가세예정고지서액조회, 세금포인트조회, 신용카드매출자료조회 등)

◆ 생활세금 서비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증여세 자동계산 등 홈택스 사용자의 세무처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3.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이용 안내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이용 혜택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수취금액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직불카드 등과 대중교통 · 전통신장 사용분은 그 초과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직불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금액

- 공제대상 금액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 가맹점 세액공제(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1.3%(2016. 12. 31. 까지)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음식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016. 12. 31. 까지 2.6%).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전화망을 사용)에 대하여 건별 20원의 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전자화폐 ·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분

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

전문직, 병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적용대상 업종

구 분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회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에 한한다)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가구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 밀주 업종(4개)은 2015. 6. 2.(시행일)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업종임

※ 주황색 업종(5개)은 2016. 7. 1.(시행일)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업종임

-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는 홈택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에서 해당 현금영수증 거래금액 등을 입력 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분 제외).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hometax.go.kr」, 스마트폰 「구글스토어/애플 앱스토어-국세청 홈택스앱」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바랍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 발급시 1%),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 ※ 미전송가산세(개인사업자 공급가액의 0.3%, 법인사업자 1.0%), 지연전송가산세(개인사업자 공급가액의 0.1%, 법인사업자 0.5%)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5. 7. 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6. 1. 1.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7. 1. 1.	•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 기타 발급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126-1-2-3)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 ◆ 발급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 ◆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전자계산서(면세)의 경우에는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 세액공제

5. 기타사항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일 것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 금년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가 아닐 것 (자녀장려금만 해당)

㉞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 가구 유형별로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 사업소득)의 금액을 장려금 산정표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11, 11의2)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화면우측 상단의 「모의계산」에서 계산가능

㉞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6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ARS 등 전자신청하고, 받지 못한 경우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㉞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㉞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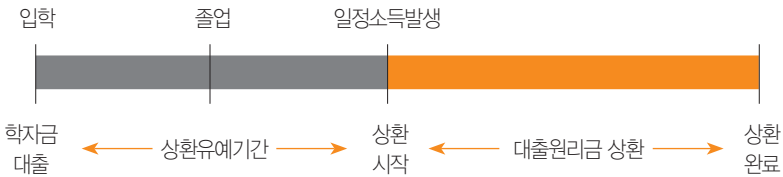
- ◆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든든학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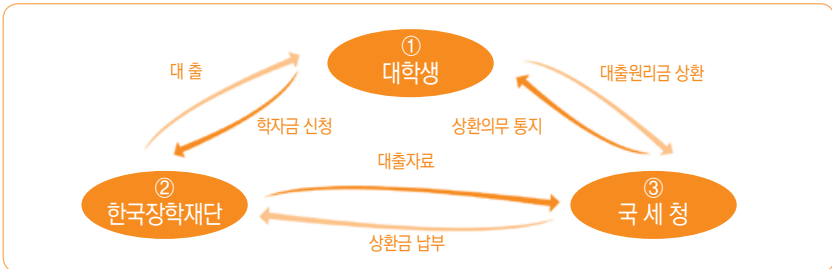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란?

◆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그 대출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다가 연간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환의무 발생



〈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및 상환 구조 〉



☒ 대출 및 상환 개요

◆ 대출대상자

소득 하위 8분위(월 소득인정액 855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대학입학 허가를 획득한 자도 가능(대출당시 35세 이하)

※다자녀(3인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 없이 대출이용 가능

- 성적 'C학점' 이상 이고,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하는 자

◆ 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 연간 300만원
 - 생활비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분위 이하자의 경우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무이자, 그 외는 정상이자 계산
- 대출금리는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결정
 - ※ 이자율 : 2016. 1학기~2015. 2학기 2.7%, 2015. 1학기~2013년 2.9%, 2012년 3.9%

◆ 의무적 상환액

-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함
 - 소득발생에 상관없이 대출자의 선택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 납부(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에 납부 불가)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¹⁾) × 20%(상환율)

1) 201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 1,053만원(교육부 고시, 2015. 1. 16.)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 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산출된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 36만원 상환
 - ※ 상속·증여재산에 의해 발생한 의무상환액은 최소부담액(36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된 의무상환액 납부

☒ 의무상환 대상자

◆ 원천공제 대상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으로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

1. 매월 원천공제 납부

- 국세청이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7월~익년 6월)가 시작되기 전 대출자(5월) 및 고용주(6월)에게 각각 통지

- 고용주는 대출자에게 급여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상환금명세서에 의하여 상환내역을 신고 및 납부

2. 원천공제 선납(先納)제

-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매월 원천공제대상자를 통지하기 전, 대출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하면 상환의무가 종료되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음
 - 1년분 선납 : 5월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액(1년분) 일시 납부
 - 분할납부 : 50%는 5월말까지, 나머지 50%는 11월말까지 납부
 - ※ 원천공제 통지액을 선납(일시납 or 분납)하는 경우 대출자가 원천공제 대상자임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음

3. 원천공제 개시 도중 잔여액 납부

-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던 중이라도 원천공제 통지액에서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은 일시에 납부가능하며 잔여액 납부 시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중단함

◆ 고지·납부 대상자

- 종합·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신고된 국세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대출자에게 납부고지서 발송
 - 대출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됨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은행창구 수납 안됨)
 - ※납부가능시간 : 평일 09:00~19: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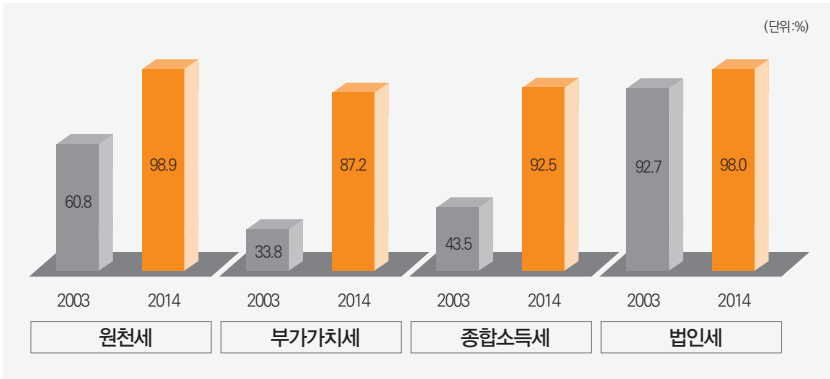
☞ 상담 및 문의

-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 126 번 ☎ 1 번 ☎ 4 번
-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

●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

㉠ 일반세정

① 전자세정을 통한 납세편의가 대폭 확대되어 신고 10건 중 9건 이상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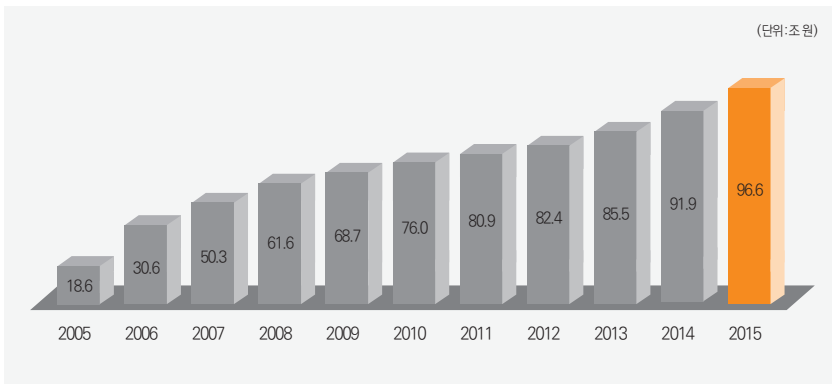
[주요 세목 전자신고 현황]

-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세청은 2002년 11월부터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하여 전자신고 및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가 가능한 「홈택스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7월 서울 시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2001년 7월 전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2002년 11월부터 본격 실시

- ◆ 전자신고 비율이 높은 세목은 원천세로서 2003년 60.8%에서 2014년에는 100%에 근접한 98.9%를 기록하였으며, 법인세의 경우도 2003년에는 전자신고 비율이 92.7%였으나, 2014년에는 98%까지 증가하였습니다.
- ◆ 전자신고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서 2003년 33.8%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53.4%p가 증가한 87.2%를 기록하였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2003년 43.5%에서 2014년 92.5%로 49%p의 높은 증가를 보입니다.

② 세원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의 성공적 정착 :
10년 동안 발급액은 5.2배, 건수는 11.2배 증가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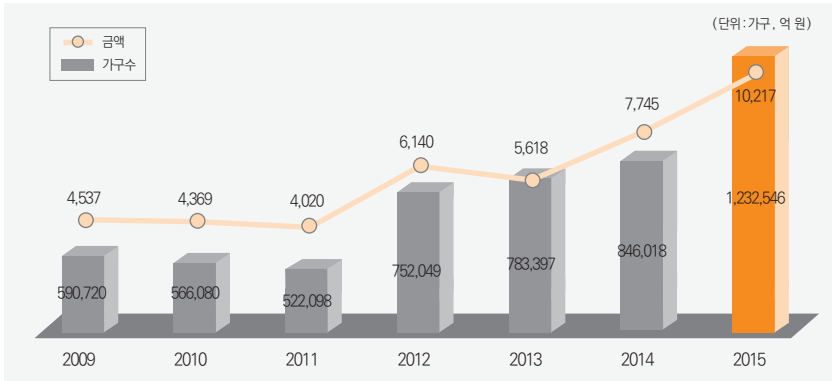
◆ 국민들의 현금 구매분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 및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하여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2005년에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 제도* 시행 원년인 2005년에는 18.6조 원(4.5억 건)이 발급되었으나,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96.6조원(50.4억 건)이 발급되어 5.2배(건수는 11.2배)의 높은 증가율을 보입니다.

* 의무발급 대상 확대 : 2010년 4월 전문직 추가, 2013년 10월과 2015년 6월 업종 추가

• 건별 평균금액은 41.3천원에서 19.2천원으로 감소하여 소액금액까지 세원의 양성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③ 저소득근로자를 위해 아시아에서 처음 시행한 근로장려금 총 4.3조 원 지급: 7년 동안 지급금액은 2.3배, 지급가구는 2.1배 증가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지급가구 현황]

◆ 국세청이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근로의욕 장려를 위하여 아시아 최초로 2009년에 실시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7년 동안 총 4조 2,64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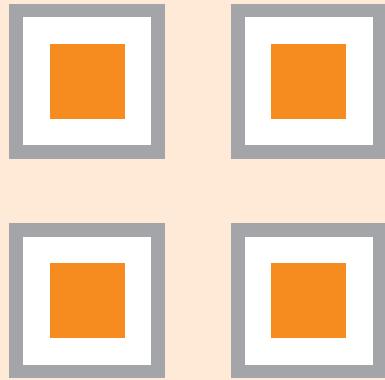
• 지급금액은 2009년 4,537억 원에서 2015년 1조 217억 원으로 2.3배 증가하였으며, 지급가구도 2009년 59.1만 가구에서 2015년 123.3만 가구로 2.1배 증가하였습니다.

* 1 가구당 평균 지급금액은 76.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7.9% 상승하였습니다.

2016

생활세금

시리즈



7

성실납세 지원제도

- 01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122
- 02 세금포인트 제도 124
- 03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126
- 04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128
- 05 징수유예 · 납기연장 제도 130
- 06 국선대리인 제도 132
- 07 영세납세자 지원단 133

1.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 세정 상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5조).

◆ 납세담보제공 면제

- 징수유예 · 납기연장 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의 경우 표창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의 경우에는 2년간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 세액 5억원 한도(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

◆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 민원봉사실 내에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 법인세 서면분석대상 제외

- 우대관리 기간 내에는 서면분석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사무처리규정 제93조)

◆ 개별소비세 순환점검 유예

- 우대관리 기간 내에는 순환점검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점검을 유예합니다.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5조)

☒ 기타 사회적 우대혜택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 납세자에 한함)

◆ 공항 출입국 우대

- 일정요건 및 적격심사를 통과한 모범납세자(지방청장 추천자 포함)에게 선정일로부터 3년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일반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합니다(3년간).
- ※ 30억원을 한도로 보증 (일부 일반기업에 대한 차감한도 15억원 적용 배제)

◆ **보증지원우대(국세청장 표창 이상, 3년간 적용)**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보증료 10% 할인, 보증한도 10~30억원 확대,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용역 물품 적격 심사 시 신인도 부문에 가점을 부여합니다(3년간).

◆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3년간)**

◆ **대출금리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1~3년간)**

-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부산·경남·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의료비 할인혜택(소속 임직원까지 제공, 3년간)**

-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부산 동의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 ※ 대구·경북지역은 지방청장 이상, 부산·경남 및 대전·충청지역은 세무서장 이상 혜택 제공

◆ **금융신용평가에 모범납세자 수상이력 반영(모든 수상자, 3년간)**

◆ **대명콘도 회원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소속 임직원까지 제공)**

-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 이용(3년간)

◆ **전용 신용카드 발급(모든 수상자 및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

- 주유, 의료 등에서 특별 혜택이 제공되는 신한카드 발급(3년간)

2. 세금포인트 제도

㉠「세금포인트」 제도란?

- ◆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함.

㉡「세금포인트」 부여 방법

구 분		법 인	개 인
세 금 포 인 트 부 여	대상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모든 개인납세자
	부여대상 세목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부여시점	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누적관리 기간	최근 5년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2000년부터 누적 부여
	부여기준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점(고지분 제외)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점(고지납부 0.3점)

㉠「세금포인트」 활용

구 분		법 인	개 인
납세 유예 시 사용	금액	세금포인트×100,000원×50%	세금포인트×100,000원×100%
	한도	연간 5억원	좌 동
	유예 기간	최장 9개월	좌 동
	승인 요건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으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좌 동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 인터넷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조회·발급」 클릭 ⇒ 기타 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 가능

- 본인 신분증(법인 대표자 포함) 또는 위임장 필요

3.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 경감 혜택

-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기본 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세액공제 : 각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비교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2015. 1. 1. 이후 가입시 5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 향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 (비교세저축은 제외)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 증여세 경감 혜택

- ◆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교세합니다.

☞ 상속세 경감 혜택

-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징수유예 혜택

-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 기부금 공제

-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 공제(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

◆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 관세 감면

-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지방세 면제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라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



4.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에 비해 추가 세금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확인 받은 경우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사업전환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 등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설비투자 지원	•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 금액의 3%세액공제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 시 7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 • 각종 감면적용 하기 전 과세표준 × 7%(일반법인 10%~17%) • 중소기업 출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각종 투자세액 공제 가능
결손금 소급공제	•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 접대비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 2,400만원(일반기업 : 1,2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율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원천징수 방법 특례	•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지방세 감면	• 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고용유지·증대 지원	• 고용 유지시 임금액의 50% 소득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 50~100% 세액공제 • 복지·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취득 지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이전 소득 50% 감면 및 취득비용의 7% 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한도), 기술대여 소득 25% 감면
상생결제제도 이용 지원	•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0.1~0.2% (지급기한별) 세액 공제

☞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 공장(본사) 이전연도와 그 후 9년(6년)간 세금감면 - 이전연도와 그 후 6년(4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감면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 직전 연도 초과액의 40%(중소기업 50%)와 해당연도 지출액의 2~3% (중소기업 25%*)중 큰 금액 세액공제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 10%, 중견기업 8% · 설비투자금액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를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10%))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 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시설투자금액의 최대 9%를 고용인원 증가와 연계하여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하고 내 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제출 시 1만원~1,000만원 세액공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100% 감면 *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하고 내 감면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사회공헌사업 지원	·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근로소득 증대기업 지원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5%(중소·중견기업은 10%) 세액 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세액 공제
청년고용증대지원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200만원(중견, 중소 500만원) 세액 공제

※ 감면내용 및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레 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징수유예 · 납기연장 제도

☒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신청 :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연장 기간 : 기한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납부기한 연장 사유

- ① 천재 · 지변이 발생한 경우
-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⑥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⑨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포함)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⑩ ②, 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 신청 :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징수유예 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징수유예 사유

-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⑥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의 효과

- 가산금의 징수 제한 :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체납처분의 금지 :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6. 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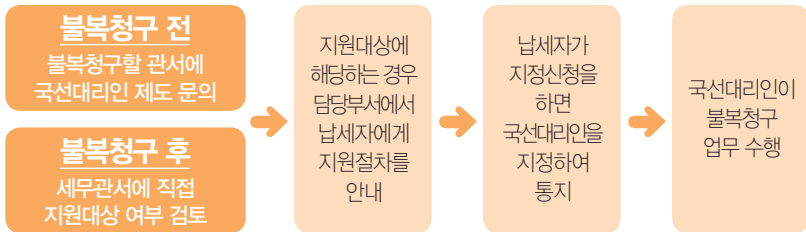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국선대리인은 누구?

- ◆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 담당관실
 - 도움요청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없이 126→3번으로)

7.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개인 영세납세자 및 영세 중소기업인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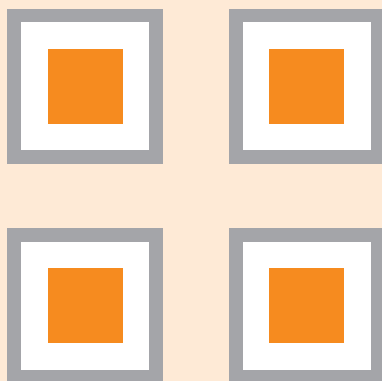
○ 영세납세자 지원단

- ◆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 및 영세중소법인입니다.
- ◆ 세무도우미는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봉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내부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도움요청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없이 126→3번으로)

○ 제공되는 서비스

- ◆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및 영세법인의 과세자료 처리,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제공**
창업을 하는 생계형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업무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업무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전통시장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바쁜 생활활동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영세납세지원단이 현지에 출장하여 세무업무 전반에 대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제공**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문제에 대한 신속한 정정지원을 위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외국인 다문화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지역이동 제한 등 국내생활 정착에 어려움이 많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종합지원시설인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신고지원 및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현장상담실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세금고충·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현장 중심의 신고지원과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6
생활세금
시리즈



8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 제도

- 01 납세자권리헌장 136
- 02 납세자보호위원회 138
- 03 납세자보호담당관 139
- 04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140
- 05 억울한 세금의 권리 구제 절차 142
- 06 탈세제보포상금 144
- 07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46
- 08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147
- 09 해외 금융계좌 신고포상금 148
- 10 기타 신고포상금 149

1.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1.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납세자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권익에 영향이 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세금고충 수용 여부,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여부 등을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세무관서(국세청 제외)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관서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민간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많이 구성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위원회 참여를 과감히 배제하였습니다.
 - 지방국세청 → 외부 민간인 위원 10명 : 내부 공무원 위원 8명
 - 세무서 → 외부 민간인 위원 8명 : 내부 공무원 위원 6명
 -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

㉸외부 민간위원은 세법 및 회계 분야 전문가

-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세금고충민원과 조사기간 연장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회계분야에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들은 세무사, 회계사,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가진 고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납세자보호담당관

㉞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란?

- ◆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ombudsman(옴부즈맨) 제도를 말합니다.
- ◆ 조사집행조직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국 세무관서(국번없이 126 → 3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㉞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은?

- ◆ 국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시정해 드립니다.
- ◆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부당한 권한행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진행과정을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즉시 조치해 드립니다.
- ◆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불만사항이 있으십니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 세금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의신청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해드립니다.

4.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부당하게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2009. 10. 26. 시행).

㉸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란?

◆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침해 행위 예시

1. 세법·동 시행령·동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세법 등에 위반된 세무조사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 중복 세무조사
3.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18 제 1항 제 3호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중소 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행위
4.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5.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서류·증빙을 열람·복사하거나 일시 보관하는 행위
6.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7.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8. 위 1~7호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일반 국세행정 관련 권리침해 행위 예시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7. 위 1~6호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㉞ 권리보호요청과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여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권리침해 유형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법 등에 위반된 세무조사 • 중복 세무조사 	세무조사 중지 (조사계획 철회 및 조사반 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 요구 	조사반(담당) 교체, 징계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침해행위 2회 이상 반복 	조사반(담당)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침해행위 	시정요구

◆ 세법 등에 위반된 세무조사와 중복 세무조사 여부는 세무서 또는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중지권을 행사합니다.

5.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심사 · 심판청구
- 행정소송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고충민원 신청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 세무서 ·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과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 ·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 · 지방국세청 · 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이의신청

-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심사·심판청구

-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가능)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심사·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심사·심판·감사원 심사청구는 중복 청구 불가).

㉠행정소송

-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39pag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탈세제보포상금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확립하여 '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을 확산시키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탈세제보란?

- ◆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세무관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제보의 접수

- ◆ 인 터 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탈세제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 서면접수 : 국세청,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 전 화 : 국번없이 126 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탈세제보의 처리 및 회신

- ◆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하여 드립니다.
- ◆ 포상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보자 신원보호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유형

- ◆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 ◆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 ◆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 ◆ 그 밖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 포상금 지급액

- ◆ 탈루세액 등의 5~15%(30억원 한도)

○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 ◆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내용 등의 자료
- ◆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7.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국세청에서는 전문직 사업자 등이 보유한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분께 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 신고대상 거래 유형

- ◆ 성형외과 · 치과 · 피부비뇨기과 등 의료업자, 변호사, 입시학원, 웨딩홀 등 사업자와 거래한 후 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업자 외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내용과 함께 차명계좌번호를 신고(과거 차명계좌 거래내용도 신고 가능)

☒ 차명계좌 신고의 접수

- ◆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 ◆ 서 면 : 사업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신고시 포함할 내용

-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6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하게 작성하고 입금 증빙(인터넷뱅킹 내역, 통장 사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고(증빙이 없어도 가능)

▣ 거래내용 작성 예시

- “○○년○○월○○일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시술대금 00만원을○○명의 차명계좌(○○은행, 계좌번호00-00-000)로 입금하였습니다.”

☒ 포상금 지급

- ◆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5,000만원 한도로 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8.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개요

-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원 까지 포상금 지급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 신고포상금 지급률

(2015. 2. 3. 부터 시행)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 징세기 은닉재산 신고담당자에게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은닉재산 신고화면 접근경로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 고객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9.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 신고방법

- ◆ 6하원칙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접수

■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신고처

- 국세청 홈페이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 지방청(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법인납세과, 재산세과)

○ 포상금 지급

- ◆ 포 상 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의 5~15% (한도 20억원)
- ◆ 지급시기 :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이의 제기기간이지났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된 날(형사처벌의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지급방법 : 신고인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에 이체
- ◆ 지급제외 : 가명, 제3자 명의로 제보한 경우,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제보한 경우,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0. 기타 신고포상금

신용카드 결제거부·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신고방법

- ◆ 현금거래확인신청 등 신고서 양식에 의해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가 있는 날부터 1개월(신용카드)·5년(현금영수증)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현금영수증의 경우 2012. 2. 2. 거래분부터)

▣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거래당사자인 신고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신고

▣ 신고처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모바일(스마트폰)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우편 및 세무서 방문 신고(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포상금 지급

- ◆ 결제·발급거부금액(5천원 미만 금액 제외)의 20%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㉞ 신고대상

- ◆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 사업자

㉞ 신고방법

- ◆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

▣ 증거자료 예시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 명의위장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사업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

▣ 신고처

- 국세청 홈페이지 - 「탈세제보」 - 「명의위장사업자 신고」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청 개인납세 1과, 세무서 개인납세과

㉞ 포상금 지급

- ◆ 포 상 금 : 신고건별로 1 백만원 지급
- ◆ 지급시기 및 방법 :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 다음달 20 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이체
- ◆ 지급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 세금탈루 목적 등으로 자기의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

○ 신고방법

- ◆ 6하원칙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 또는 세무서,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제출 또는 인터넷 접수

▣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업소명
-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 신고처

- 거래일로부터 일정기간(5년 내 등) 경과에 상관없이 신고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국세청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접수(다음 중 택일)
 - 우편제출 : 국세청 또는 세무관서, 여신금융협회(소비자보호팀)
 -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탈세제보 →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 → 제보내용 등록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참조

○ 포상금 지급

- ◆ 포 상 금 : 건당 10만원
- ◆ 지급시기 : 위장거래로 확인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 ◆ 지급방법 : 신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 ◆ 지급제외 : 동일가맹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신고자에게만 지급

2016

생활세금시리즈

인쇄일 | 2016년 5월 발행일 | 2016년 5월

발행처 | 국세청 세정홍보과

집필자	세정홍보과장 권창현	행정사무관 김태성	국세조사관 정지석
	국세조사관 윤혜민	국세조사관 도우형	국세조사관 정희석
	국세조사관 강신혁	국세조사관 김민규	국세조사관 정시혜
	국세조사관 이은주	국세조사관 김용재	국세조사관 차지훈
	국세조사관 황진하	국세조사관 김요수	국세조사관 박준성
	국세조사관 오정환	국세조사관 이대희	국세조사관 이만호
	국세조사관 임행완	국세조사관 최태규	국세조사관 위 용
	국세조사관 배재홍	국세조사관 김현경	국세조사관 추세웅
	국세조사관 이지연	국세조사관 윤동석	국세조사관 조성수
	국세조사관 한정희	국세조사관 이주영	국세조사관 이병용
	국세조사관 최환규	국세조사관 이 찬	국세조사관 이용문
	국세조사관 김영민	국세조사관 안형진	국세조사관 이병주
	국세조사관 김창희	국세조사관 정 훈	국세조사관 백경미
	국세조사관 김성호	국세조사관 지재홍	국세조사관 김영환
	국세조사관 정은주		

디자인·인쇄·구입문의 | (주)일진커뮤니케이션 (02)2277-4424

국세상담이 필요할 땐 국번 없이

국세청 126 세미레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이 책자는 2016년 3월 31일자 시행령 개정사항까지 반영하였으며, 책자에 대한 오류·수정 요청은 국세청 세정홍보과(044-204-3184)로 연락바랍니다.

이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에서 전자책자로 다운로드(무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승인 없이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정가 : 1,500원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세금상식을 모았습니다.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에게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359-10



값 1,500원



ISSN 2093-4190
2016년 4월 국세청 세정홍보과

국세행정에 대한 불만, 고충, 개선건의는

국세청 홈페이지(국민신문고 - 고객의 소리)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2번 선택 후 9번) 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